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6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정혜경·김종민·조 국

이용우 • 윤종오 • 전종덕

정을호 · 백승아 · 용혜인

김 윤 · 임미애 · 고민정

허성무 의원(13인)

제안이유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증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작업증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이 규정되 어 있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 규정만 있을 뿐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도 미비함.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때에만 참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주요내용

- 가.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근로자대 표를 참석시키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 사업주, 근로자대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석시키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후단, 제125조제4항, 제132조제1항 및 제141조).
- 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 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에 따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 요양 종료 후 업무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근로의 제한 또는 요양 등을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8조 및 제138조의2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후단 중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을 "이 경우"로 한다.

제51조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로 한다.

제125조제4항 중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을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130조제2항 본문 중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

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요양 후 특수건 강진단대상업무로 복귀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 또는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132조제1항 중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한다"를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을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근로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2(요양 종료 근로자에 대한 조치) ① 사업주는 제138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마친 근로자의 경우 장해 정도, 사업장의 상황, 해당 근로자의 의사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무로 전환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환 배치한 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이 산업재해 발생 이전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환배치하는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격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후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후단"을 "제1항"으로 한다.

- 이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1. 사업주
- 2. 근로자대표
- 3.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요양급여 신청자 등"이라 한다)

제170조제1호 중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제4항 및 제138조제2항을"로 한다.

제175조제5항제14호 중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을 "근로자대표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② (생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	③
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	
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	
서는 아니 된다. <u>이 경우 근로</u>	<u>이 경우</u>
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104조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u>는 때에는</u>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 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 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 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 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 ③ (생 략)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 | 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 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 ⑧ (생 략)

	<u>산업</u>	재해	가_	발	생할	<u>급</u>
박한	위험이) 9]는	경.	우 !	또는
제104	조에 대	다른	유형	레인	자에	노
출되어	거 생명	과 (안전	에	위하	우
<u>려가</u>	있는	경우	에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 또는 제104조 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작업환경측정 시 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 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 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 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신</u>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혀	행고	<u> </u>	(ہے۔
(47	W 7	Γ∕⊏	$\overline{\Pi}$

- ② -----다음 각 호의 경 우에 근로자에 대하여-----
-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 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 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 하여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 해로 요양 후 특수건강진단대 상업무로 복귀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 사하던 중 직업병 소견이 있 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 또는 작업 장소를 변경 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 는 경우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

② ~ ⑤ (생 략)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 전)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 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 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그그리아로크 의사이키지 의리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
한 등) ①
근로를 금
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
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근로를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
제138조의2(요양 종료 근로자에
<u>대한 조치) ① 사업주는 제138</u>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 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 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 다)를 할 수 있다. <u>이 경우 사</u> 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람 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렁으 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마친 근로자의 경우 장해 정도, 사업 장의 상황, 해당 근로자의 의사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 여 적합한 업무로 전환배치하 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 환 배치한 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이 산업재해 발

환 배치한 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이 산업재해 발생 이전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전환배치하는 업무 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격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1소(역약소사) ①	
<u>이 경우</u>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ㅂ	<u> </u>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역
한주사에 찬석하게 하여야	하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 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생략)
-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 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 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 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 · 4 제1항-----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 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 니 된다.
- ⑤ ⑥ (생 략)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7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다.

- 1. 사업주
- 2. 근로자대표
- 3.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 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 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 천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요양급여 신청자 등"이라 한 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u>

- (5)·(6) (현행과 같음)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 리한 처우를 한 자

2. ~ 8.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3. (생략)
-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u>근로자대</u> 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 16. (생략)

⑥·⑦ (생 략)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제4항 및 제138조제2항
<u>을</u>
2. ~ 8.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1. ~ 13. (현행과 같음)
14
근로자대
표를
<u> 11 </u>
15. · 1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